

약관 변경 전후대비표

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약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1조 <생략></p> <p>제2조 가입대상 ① 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(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) 이나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 ② 이 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<u>으로</u>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<u>통하여</u> 1인 1계좌에 한합니다.</p> <p>제3조 ~ 제6조 <생략></p> <p><신설></p> <p>제7조 계좌부활 <생략></p> <p>제8조 소득공제 <생략></p> <p>제9조 양도 및 질권설정 <생략></p> <p>제10조 기타 <생략></p> <p>부 칙 1. 이 약관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1년 4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 <신설></p>	<p>제1조 <좌동></p> <p>제2조 가입대상 ① 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(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) 이나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 ② 이 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.</p> <p>제3조 ~제6조 <좌동></p> <p>제 7조 전환신규 기존 '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'을 보유한 고객이 제2조 제1항의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이 저축으로 전환신규가 가능하며, 전환신규한 계좌의 납입횟수, 저축총액, 가입기간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의 기준을 따릅니다.</p> <p>제8조 계좌부활 <좌동></p> <p>제9조 소득공제 <좌동></p> <p>제10조 양도 및 질권설정 <좌동></p> <p>제11조 기타 <좌동></p> <p>부 칙 1. 이 약관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9년 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 2. 이 약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 (제7조 전환신규'에 대해 기 가입고객 미적용)</p>	<p>가입대상 문구변경</p> <p>조문신설</p> <p>부칙신설</p>